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설명자료

2019.9

# 1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2

## ○ 개정사유

- ①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 ② 부적절한 수출통제 운영사례의 지속 발생 등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 ○ 주요 개편 방향

-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의 1지역" 및 "가의 2지역" 으로 세분화 하고, "나 지역"은 현행 유지
  - "가의 1 지역" 및 "가의 2 지역" 분류시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여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
- 가의2 지역에 대한 통제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을 적용하되, 일부는 "가의 1" 지역 수준 적용

상세 변경사항은 고시개정 신/구  
대비표를 반드시 확인 요망

## 2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총괄표)

4

구분	종류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신설)	나 지역
포괄허가	사용자포괄허가 신청대상	CP* 전체 등급	CP A 등급: 예외적 허용 <sup>1)</sup> CP AA, AAA 등급: 기존과 동일	
	품목포괄허가 신청대상	CP AA, AAA 등급	CP AAA 등급 <sup>2)</sup>	
	사용자포괄허가의 재수출	가능	<b>예외적 허용<sup>3)</sup></b>	
	사용자포괄허가 신청서류	1종(신청서)	<b>3종<sup>4)</sup></b>	
	심사기간	5일	<b>15일</b>	
	유효기간	3년	<b>2년<sup>5)</sup></b>	
개별허가	신청서류 <sup>6)</sup>	3종	5종	7종
	심사기간	5일	<b>15일 이내<sup>7)</sup></b>	
	<b>재수출·중계수출<sup>8)</sup></b>	<b>허가면제</b>	<b>허가신청 필요</b>	
중개허가		<b>허가면제</b>		<b>허가신청필요</b>
상황허가	허가대상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의심되는 경우	

\* CP는 Compliance Program 으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의미

## 2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총괄표)

5

- 1)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 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 시, 해외 전시회 참가 시
- 2) 최종사용자 국가, 정부기관인 경우에는 'AA'등급 신청 가능, 플랜트건설 계약 등 동일 목적의 多품목 장기 공급
- 3)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정
- 4) 단, 최종수하인이 ①수출자의 최대주주, ②수출자의 해외본점, ③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④수출자의 해외지점, ⑤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1종)
- 5) CP AAA 등급 기업의 경우 3년
- 6) (가의 1지역: 총 3종) 신청서, 전략물자 판정서, 영업증명서  
(가의 2지역: 총5종) [가의 1지역 서류(3종)] + 최종수하인 진술서, 최종사용자 서약서  
(나 지역 : 총7종) [가의2 지역 서류(5종)] + 수출계약서, 수출자 서약서
- 7) CP AAA 기업 5일, AA 기업 10일, A기업 15일(단, 소관체제 가입국으로 동 물자 수출포함 시 10일)
- 8) 예: 일본 > 한국 > 제3국 재수출/중계무역 시 한국에서 수출허가 신청 필요(과거 면제)

# 3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일반기업)

## ○ 일본의 '가의 2' 지역 분류에 따른 전/후 비교표

구분	종류	전	후	비고
포괄허가		해당없음		현행과 동일
개별허가	신청서류	1. 수출허가 신청서 2. 판정서(전문/자가) 3. 영업증명서	1. 수출허가 신청서 2. 판정서(전문/자가) 3. 영업증명서 4. <b>최종수하인진술서 등</b> 5. <b>최종사용자 서약서</b>	"나지역" 대비 수출계약서 및 수출자서약서 면제
	심사기간	5일	<b>15일</b>	영업일 기준
	재수출,중계무역 <sup>1)</sup>	<b>허가면제</b>	<b>허가신청필요</b>	
중개허가 <sup>2)</sup>		<b>허가면제</b>		유지
상황허가	허가대상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b>의심되는 경우</b>	제50조제1항1호 ~12호

1) 예: 일본 > 한국 > 제3국 재수출/중계무역 시 한국에서 수출허가 신청 필요(과거 면제)

2) 중개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4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CP A 등급)

7

구분	종류	전	후	비고
포괄허가	사용자포괄허가 신청	가능	<b>예외적 허용<sup>1)</sup></b>	
	품목포괄허가 신청	해당없음		현행과 동일
	사용자포괄허가의 재수출	가능	<b>예외적 허용<sup>2)</sup></b>	
	사용자포괄허가 신청서류	1. 수출허가 신청서	1. 수출허가 신청서 2. <b>최종수하인진술서</b> 3. <b>판정서(자가/전문)</b>	일부조건 <sup>3)</sup> 만족시 일부 서류 면제
	심사기간	5일	<b>15일</b>	
	유효기간	3년	<b>2년</b>	

1)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 시,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 시, 해외 전시회 참가

2)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정

3) 단, 최종수하인이 ①수출자의 최대주주, ②수출자의 해외본점, ③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④수출자의 해외지점, ⑤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1종)

# 4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CP A 등급) -

구분	종류	전	후	비고
개별허가	신청서류	1. 수출허가 신청서	1. 수출허가 신청서 2. 판정서(전문/자가) 3. 영업증명서 4. 최종수하인진술서 5. 최종사용자 서약서	일부조건 <sup>1)</sup> 만족시 일부 서류 면제
	심사기간	<b>즉시(심사면제)<sup>2)</sup></b>	15일 <sup>3)</sup>	
	재수출·중계수출 <sup>4)</sup>	<b>허가면제</b>	<b>허가신청필요</b>	
중개허가 <sup>5)</sup>		<b>허가면제</b>		유지
상황허가	허가대상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의심되는 경우	제50조제1항1호 ~12호

1) 단, 최종수하인이 ①수출자의 최대주주, ②수출자의 해외본점, ③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④수출자의 해외지점, ⑤같은 수출품목(동일HS번호, 동일통제번호)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한 실적보유

2) 단, 우려거래자가 포함된 경우 담당공무원 검토 진행

3) 소관체제 가입국 등으로 동 물자 수출 포함의 경우 10일(현행과 동일)

4) 예: 일본 > 한국 > 제3국 재수출/중계무역 시 한국에서 수출허가 신청 필요(과거 면제)

5) 중개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5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CP AA 등급)

구분	종류	전	후	비고
포괄허가	사용자포괄허가 신청	가능		현행과 동일
	품목포괄허가 신청	가능	예외적 허용 <sup>1)</sup>	AAA로 한정
	사용자포괄허가 재수출	가능	예외적 허용 <sup>2)</sup>	
	사용자포괄허가 신청서류 <sup>3)</sup>	1. 수출허가 신청서	1. 수출허가 신청서 2. 최종수하인진술서 3. 판정서(자가/전문)	일부조건 <sup>4)</sup> 만족시 일부 서류 면제
	심사기간	5일	15일	
	유효기간	3년	2년	

- 1) ①최종사용자가 국가, 정부기관인 경우, ② 플랜트건설 계약 등 동일 목적의 多품목 장기 공급 예상 시
- 2)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정
- 3) 단, 품목포괄허가의 경우 ①수출허가 신청서, ②수출계약서, ③최종사용자 등 개요, ④프로젝트 설명서 등,  
⑤최종사용자 서약서, ⑥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제출
- 4) 단, 최종수하인이 ①수출자의 최대주주, ②수출자의 해외본점, ③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④수출자의 해외지점, ⑤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1종)

# 5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CP AA 등급) -

구분	종류	전	후	비고
개별허가	신청서류	1. 수출허가 신청서	1. 수출허가 신청서 2. 판정서(전문/자가) 3. 영업증명서 4. 최종수하인진술서 5. 최종사용자 서약서	일부조건 <sup>1)</sup> 만족시 일부 서류 면제
	심사기간	<b>즉시(심사면제)<sup>2)</sup></b>	<b>10일</b>	
	재수출·중계수출 <sup>3)</sup>	<b>허가면제</b>	<b>허가신청필요</b>	
중개허가 <sup>4)</sup>		<b>허가면제</b>		유지
상황허가	허가대상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의심되는 경우	제50조제1항1호 ~12호

1) 단, 최종수하인이 ①수출자의 최대주주, ②수출자의 해외본점, ③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④수출자의 해외지점, ⑤같은 수출품목(동일HS번호, 동일통제번호)을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수출한 실적보유

2) 단, 우려거래자가 포함된 경우 담당공무원 검토 진행

3) 예: 일본 > 한국 > 제3국 재수출/중계무역 시 한국에서 수출허가 신청 필요(과거 면제)

4) 중개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6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CP AAA 등급)

11

구분	종류	전	후	비고
포괄허가	사용자포괄허가 신청	가능		현행과 동일
	품목포괄허가 신청	가능		현행과 동일
	사용자 포괄허가 재수출	가능	<b>예외적 허용<sup>1)</sup></b>	
	사용자포괄허가 신청서류 <sup>2)</sup>	1. 수출허가 신청서	1. 수출허가 신청서 2. <b>최종수하인진술서</b> 3. <b>판정서(자가/전문)</b>	일부조건 <sup>3)</sup> 만족시 일부 서류 면제
	심사기간	5일	<b>15일</b>	
	유효기간	3년		현행과 동일

1)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정

2) 단, 품목포괄허가의 경우 ①수출허가 신청서, ②수출계약서, ③최종사용자 등 개요, ④프로젝트 설명서 등, ⑤최종사용자 서약서, ⑥ 예상되는 수출품목의 개요 제출

3) 단, 최종수하인이 ①수출자의 최대주주, ②수출자의 해외본점, ③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현지법인, ④수출자의 해외지점, ⑤수출자와 같은 수출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전과 동일(1종)

# 6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사항(CP AAA 등급)-

구분	종류	전	후	비고
개별허가	신청서류	1. 수출허가 신청서		현행과 동일
	심사기간	<b>즉시(심사면제)</b>	<b>5일</b>	
	재수출·중계수출 <sup>1)</sup>	<b>허가면제</b>	<b>허가신청필요</b>	
중개허가 <sup>2)</sup>		<b>허가면제</b>		유지
상황허가	허가대상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인지한 경우 · 통보받은 경우 · 의심되는 경우	제50조제1항1호 ~12호

1) 예: 일본 > 한국 > 제3국 재수출/중계무역 시 한국에서 수출허가 신청 필요(과거 면제)

2) 중개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모두 취소되나요?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기존에 발급받은 포괄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단축되거나 취소되나요?

기존에 발급받은 포괄허가는 유효기간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일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등에 자주 참가합니다. 향후 허가 대상인가요?

전시회 등의 참가는 제26조(개별수출허가의 면제)에 따라 변함없이 허가면제 대상입니다.

○ 사용자포괄허가 신청대상 요건 중 “동일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은 “실적”과 “계획”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개별수출허가 발급 실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이번 개정에 변경되는 품목 통제기준이 있나요?

금번 고시 개정은 별표2, 별표3등 품목 관련 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수출허가신청 후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나요?

제출 서류 등의 보완요청으로 인한 소요 일수는 심사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이번 고시 개정과 관계없이 기존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 ○ 고시 개정으로 인한 허가 심사 강화에 따라 CP 도입이나 등급 상향 예정인 기업을 위해 CP 지정 요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CP 도입 요건 완화를 위해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CP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 의견 청취 기회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동일할 경우 면제 가능한 서류가 있나요?

최종사용자와 최종수하인이 동일하면 최종수하인 증명서 면제가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최종사용자 서약서만 제출하면 됩니다.